

## 목 차

I. 들어가는 글 .....	1
II.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4
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현황 .....	4
2. 고용보험전산망의 운영현황 .....	6
3. 피보험자 관리의 문제점 .....	11
III. 외국의 피보험자 관리제도 .....	26
1. 일본의 피보험자 관리제도 .....	26
2. 미국·캐나다·영국의 피보험자 관리제도 .....	31
IV.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방안 .....	35
1. 고용보험 DB 정보의 활용 .....	37
2. 피보험자 관련 정보의 확충 .....	39
3. 피보험자 정보의 수집·관리방안 .....	42
4.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와 적용·징수제도 개선 .....	46
5. 정보의 신뢰성 제고 .....	47

## 표 목 차

<표 II-1> 고용보험전산프로그램 구성항목수 .....	7
<표 II-2> 고용보험전산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	7
<표 III-1> 영국·미국·캐나다의 피보험자 관련 정보 관리내역 .....	33

## 그림목차

[그림 II-1]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의 DB 구조 .....	5
[그림 II-2] 고용안정정보망의 구성 .....	8
[그림 II-3] 고용보험 정보의 입력 및 저장과정 .....	9

## I. 들어가는 글

- 현행 고용보험제도에서 피보험자 관리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에 따른 자격관리」를 의미함(좁은 의미의 피보험자 관리).
  - 넓은 의미의 피보험자 관리는 좁은 의미에 더해서 보험료 징수와 이직 후 실업급여 지급자격의 발생에 따른 구직급여 및 취직촉진 수당의 지급을 포함함.
  - 본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의 피보험자 관리로 연구범위를 제한함. 다만 피보험자 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 징수 및 실업급여 사업에서 예상되거나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도 다룸.
  
- 피보험자 관리는 고용보험 제도 자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국가의 인력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됨.
  - 우선 피보험자의 자격변동 상황에 대한 사전관리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지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 실업급여 지급 업무 이외에도 피보험자 관리를 통해 축적한 개인단위의 정보가 각 개인에게 노동시장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피보험자 관리를 통해 구축된 전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입·이직 및 재취업 등 고용변동 상황과 직종·산업별 인력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현행 피보험자 관리제도는 실업급여 지급 업무를 뒷받침하는 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지만 개인별로 노동시장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가

-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함.
- 현재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보험의 각 DB가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의 고용보험 관련 정보 및 노동시장 이력에 관한 정보가 개인단위로 관리되지 않음.
    -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는 각 정보를 개인의 ID를 이용하여 모두 수집할 수 있으나 이를 개인단위의 DB로 통합하여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각 피보험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없음. 이력DB가 있으나 각 개인의 모든 정보가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군데 모아 놓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개인의 고용관련 기록 및 인적 속성, 노동시장 정책의 수혜 여부에 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갱신되지 않는 등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기능이 취약함.
    - 고용관련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공급기능이 취약함.
    - 피보험자 관리를 통해 개인의 노동시장 이력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노동시장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움.
  - 현행 피보험자 관리제도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개인의 노동시장 이력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임.
    - 2000년 5월말 현재 피보험자수는 643만 8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134만 9천명의 30.2%, 전체 피용자 1,324만 5천명의 48.6%에 불과함.
    - 이러한 한계는 적용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및 적용 자체의 실효성과 관련된 것임. 본 연구에서는 적용범위의 확대 및 실효성의 제고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임.
- ※ 미국의 경우 1996년 현재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98%의 비농부문임금근로자(농업부문의 경우 47%)들을 포괄하고 있음(Searson and Farmer, 1997).

- 현행 피보험자 관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의 도입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음(황덕순, 2000).
  -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의 개념과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의된 적이 없었음.
  -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의 의미를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사업 수혜와 노동시장 이력 관련 정보를 개인 단위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자 함.
  -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료 징수 측면에서도 이와 관련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보험료 징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허재준(2000)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피보험자 관리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할 것임.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제Ⅱ장에서는 현행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이를 통해 부족한 정보와, DB시스템의 개선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임. 제Ⅱ장의 부록으로 피보험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사회보험인 의료보험·국민연금의 피보험자 관리제도 현황에 대해서 살펴봄. 중장기적으로 4대 사회보험이 통합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제도를 바꾸고자 할 때는 다른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관리방식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임.
  - 제Ⅲ장에서는 외국의 피보험자 관리운영방식에 대해서 살펴봄. 정보의 내용과 수집·관리방식, 이들이 노동시장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
  - 제Ⅳ장에서는 제Ⅱ장, 제Ⅲ장의 논의를 모아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함. 또한 피보험자 관리제도가 개인별 관리시스템으로 변화될 경우 보험료 징수제도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룰 것임.<sup>1)</sup>

1) 본 연구의 제Ⅱ장과 제Ⅳ장의 5절은 김동우 책임연구원이 집필하였음.

## II.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현황

- 고용보험의 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운영됨. 이는 고용보험이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리방식을 따른 데 기인함.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의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데, 고용안정사업은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업급여사업은 실업급여수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 사업별로 관리에 있어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실업급여제도 운영을 위해서 피보험자의 입직 및 이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피보험자 관리를 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피보험자의 관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용보험전산관리시스템(이하 고용보험전산망)도 사업장DB와 피보험자DB로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음.
  
- 피보험자 관리를 통하여 확보된 전체 피보험 근로자의 정보를 국가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는 고용보험전산망이 “사업장”을 기본단위로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의 노동시장 정보가 제한적이고 여러 DB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음.
  - 피보험자 DB와 이력DB에 피보험자의 기본적 속성 및 취득과 상실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임금, 고용보험 및 노동시장정책의 수혜 여부 등의 핵심적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의 방식과 수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전산망의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누락된 필수 정보의 확보 및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의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를 도식화 하면 [그림 II-1]과 같음

[그림 II-1]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의 DB 구조

(A)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자	상실일자
A	01	가	570101-	95.7.1	98.12.31
A	01	나	520101-	95.7.1	
A	01	다	590101-	95.7.1	
B	02	라	540101-	95.7.1	
B	02	가	570101-	99.1.1	
B	02	바	530101-	95.7.1	
B	02	사	560101-	95.7.1	
C	03	아	550101-	95.7.1	
C	03	차	670101-	95.7.1	
C	03	차	450101-	95.7.1	

(B)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관리번호	취득일자	상실일자	급여총액	사업장명	관리번호	취득일자
차	450101-	C	03	95.7.1	98.11.1	150만원			
나	520101-	A	01	95.7.1					
바	530101-	B	02	95.7.1					
라	540101-	B	02	95.7.1					
아	550101-	C	03	95.7.1					
사	560101-	B	02	95.7.1					
가	570101-	A	01	95.7.1	98.12.31	200만원	B	02	99.1.1
다	590101-	A	01	95.7.1					
차	670101-	C	03	95.7.1					

주: (B)의 구조는 현재 고용보험전산망의 DB구조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현재의 DB를 이용하여 2차적인 DB의 생성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을 것임.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 개인별관리방식은 피보험자를 (A)와 같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고 (B)에서와 같이 개인별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함
  - 현재의 고용보험전산망의 DB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A)와 (B) 두가지 형태의 2차 DB를 만들 수 있는데,
  - 고용보험 DB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의 양(종류)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제약이 있는 형편임.

## 2. 고용보험전산망의 운영현황

### 가. 고용보험전산망의 구성

- 고용보험전산망은 총 7개의 하위DB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각종 정보는 고용보험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력정책 수행에도 사용되는 등 다양한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Data)를 추출할 수 있는 파생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
- 고용보험전산망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고용보험과 관련된 각 지방노동사무소 및 고용안정센터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중앙집중식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음.
  - 고용보험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2000년 1월 현재 7개부문, 2,106개본으로 구성되어있음.
- 고용보험전산망은 적용·징수·지원금·급여·기금·종합통계·공통·비밀번호변경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각의 하위부문을 보험료와 3개사업(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대한 정보와 각종 통계표들을 볼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됨.

- 우선 적용부문에는 사업장 및 피보험자에 대한 취득 및 상실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 징수부문에는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액, 보험요율 등의 정보,
- 지원금부문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 급여부문에는 피보험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지급에 대한 정보가 있음.

<표 II-1> 고용보험전산프로그램 구성항목수

(2000. 1월, 분)

업 무 구 분	전 체	온라인	일괄처리
전 체	2,106	641	1,465
사 업 장 관 리	305	92	213
징 수	444	188	256
피 보험 자 관 리	418	88	330
실 업 급 여	366	113	253
기 금	125	60	65
지 원 금	244	88	156
통 계	204	12	192

<표 II-2> 고용보험전산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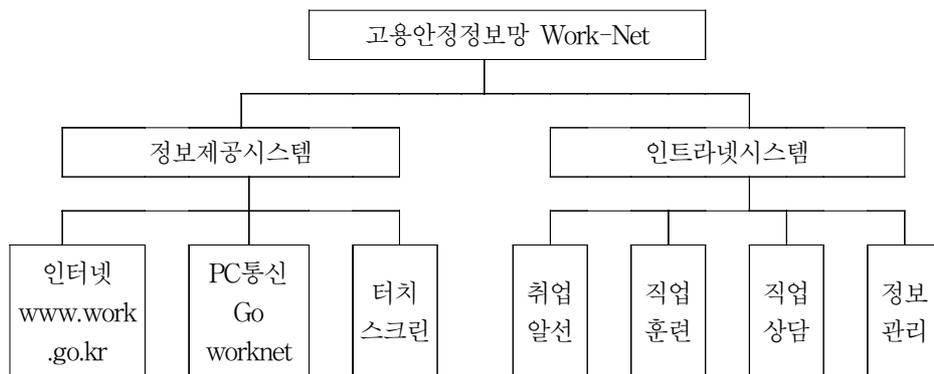
적 용	징 수	지원금	급 여
1. 사업장관리	1. 보험료보고	1. 계획/신고	1. 수급자격
2. 사업장출력	2. 수납/징수결정	2. 신청지급(고용안정)	2. 급여지급
3. 피보험자관리	3. 체납처분관리	3. 신청지급(직능개발)	3. 수당지급
4. 기본정보/통계	4. 징수금통계	4. 통계(고용안정/직능)	4. 부정수급
5. 확인통지 주간보고	5. 사무조합관리	5. 훈련기관관리	5. 결제/심사/착오분
	6. 징수출력		6. 기본정보/통계
	7. 징수공지사항		
기 금	종합통계	공 통	비밀번호변경
1. 배정	1. 통계(사업장)	1. 사용자/LOG/공지	1. 비밀번호변경
2. 운용	2. 통계(피보험자)	2. 공통코드	2. 지방관서전화번호
3. 지급/땀뱅크	3. 통계(실업급여)	3. 단말정보입력	
4. 기본정보/통계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전산망에서의 피보험자 정보는 적용부문, 급여부문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개인의 입직과 이직 정보 이외의 교육훈련, 임금 등의 정보는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이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가 실업급여의 지급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에 대한 판단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음.
  - 고용보험전산망내의 피보험자 DB는 총 32개의 하위 DB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피보험자 자격변동(입직, 이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나. 타전산망의 현황

- 현재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전산망은 고용보험전산망 이외에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실업자관리DB시스템이 있음.
  - 고용안정정보망은 취업정보, 직업정보, 고용동향정보, 직업훈련정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를 구비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그림 II-2] 고용안정정보망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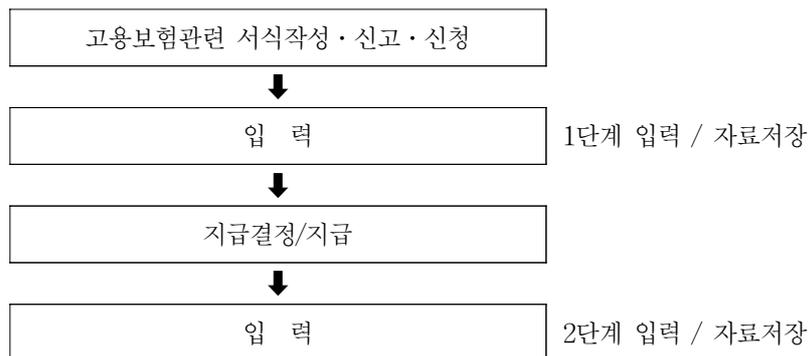


- 실업자관리DB시스템은 정부실업대책의 부정수혜를 확인하고 실업자에 대한 심층상담과 실업자 특성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축하였음. 실업자관리DB시스템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DB를 비롯해서 구직등록DB, 직업훈련DB, 공공근로DB, 생활보호자DB, 실업자대부DB의 6개 DB로 구성되어 있음.
- 이상과 같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고용안정정보망, 실업자관리DB시스템은 고용보험전산망이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웹 기반(Web-based)환경으로 구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 세 가지 전산망의 정보 교환에 있어서는 실시간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향후 이 세 가지 전산망의 정보 호환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의 관리

- 고용보험 관련 정보는 고용보험 업무가 진행되면서 입력·생성되는 자료로서 두 단계에 걸쳐 입력·생성됨.

[그림 II-3] 고용보험 정보의 입력 및 저장과정



- 서식의 작성 및 신고 : 고용보험법령내의 각종 서식을 기준으로 사업

- 주 및 피보험자 개인에 의하여 해당 지방노동사무소 및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및 신청.
- 1단계 입력 및 저장(DB) : 신고 및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사무소 및 고용안정센터에서 신고 및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 지급결정 및 지급 : 지방노동사무소 및 고용안정센터에서 신고 및 신청을 토대로 각종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의 해당여부 및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는 과정.
  - 2단계 입력 및 저장(DB) : 지급여부의 판단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 및 고용안정센터에서 각종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의 지급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 고용보험 정보는 크게 사업장과 관련된 자료와 피보험자에 대한 자료 두 가지로 구분됨.
- 사업장 관련 자료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대한 생성 및 소멸, 업종·상시인원·자산규모 등의 정보와 함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보험료 등의 정보를 포함함.
  - 피보험자 관련 자료 :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실업급여 관련사항, 연령·성별·학력과 직종·임금·근로시간 등 개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피보험자DB, 이력DB 등).
- 이러한 고용보험 정보는 활용측면에서 노동시장동향의 파악에 매우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고용보험 정보는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으로 Panel Data의 특성을 지니게 됨.
  - 고용보험 사업장의 생성 및 소멸과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의 고용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산업별 노동수급의 변화, 일자리 창출, 직업이력(work history) 변화 등의 파악 뿐만 아니라 예측까지 가능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고용보험 정보(data)는 다양한 연구와 취업알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책자료로도 다양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적용범위의 한계와 Data의 신뢰성 문제로 인하여 다소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소규모사업장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따르는 어려움과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 피용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의 고용보험의 관리 방식이 사업장단위의 관리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전산망의 운영도 이에 따라 행해지고 있음.
- 현재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피보험자 관리 역시 실업급여 수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임금 등의 주요 변수가 누락되어 양질의 자료로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실업자재취직훈련등을 제외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 등과 사업주 주관하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가 사업장단위로만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입직·이직 이외의 경력관련 주요 정보가 누락되고 있는 실정임.

### 3. 피보험자 관리의 문제점

- 피보험자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첫째, 피보험자 관련 정보의 질적 측면의 관리, 둘째 정보의 양적 측면(종류)의 관리, 셋째 정보의 활용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가. 피보험자 정보의 질적 측면

### 1) 입력오류 및 지연입력의 문제

- 전술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 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모든 업무 처리, 즉 고용보험성립·소멸신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인정,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신청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전산입력이 행해짐.
  - 이 과정에서 신고된 정보가 잘못되거나 입력 오류(punching error), 혹은 입력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 잘못된 정보의 신고 및 입력오류는 Data의 질(quality)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고용보험 Data를 이용한 통계표에서도 어느 일정기간의 고용관련 특성이 잘못 발표될 우려가 있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실제로 일어난 사건 또는 행위가 신고기간을 넘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연신고된다는 점도 큰 문제임.
  - 현재 신고되는 사유발생일과 신고처리일이 동시에 입력되고 있기 때문에 사유발생일이 정확히 입력될 경우에는 비교적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그러나 사유발생일이 정확히 신고되지 않거나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사항은 Data의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Data의 동질성에도 큰 영향을 미침. 예를 들면 10월에 이직한 사람과 12월에 이직한 사람이 하나의 처리기간<sup>2)</sup>내에 동시에 섞여 있는 형편임.
      - ※ 일본에서는 상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 등의 서식은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Reader를 이용해서 입력하고 있음.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자 및 취득자신고 등은 사유발생일(실제 이직일)이 아닌 자료처리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임.

- 피보험자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정확한 신고를 통해 정확한 Data를 확보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엄수와 즉각적인 입력을 통해 지연입력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이직사유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기한내 신고 여부 및 사유발생일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항은 접수단계에서 담당자가 일차적으로 검토(screening)하는 절차가 필요함.
  
- 입력오류의 방지 방안
  - 입력오류의 해결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첫째 프로그램에 입력 값의 범위를 설정하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오류경고표시(error message)를 화면상에 나타내 주는 방법이며, 다른 한가지 방법은 중앙에서 오류를 확인하여 지방노동사무소 및 고용안정센터의 확인을 거쳐 수정하는 방법임.
  - 현실적으로 방대한 고용보험의 Data양을 고려할 때 후자의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며, 만약 실시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에 한정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 DB내의 정보를 검토하여 “입력 값(code)의 범위”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매년 입력가능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연도, 학력, 관서코드 등이 이에 해당됨.
  
- ☞ 고용보험 Data의 오류를 수정하는 Data 정화(data purification)작업은 입력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연입력은 피보험자격상실사유, 즉 이직사유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음.
  -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인하여 상실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장조사를 거쳐 직권말소로 피보험자 상실을 처리하고 있으며, 집계 역시 사유발생일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일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인한 피보험자격상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며, 집계된 자료의 해석시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폐업·도산 이외의 이직사유로 피보험자격 상실자가 실제 이직일보다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집계되는 이유는 첫째, 사업주의 지연신고, 둘째, 지방노동관서 담당자의 지연입력으로 판단됨. 따라서 지연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고 지방관서 담당자를 독려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 2) 데이터베이스(DB)간의 연계 부재

- 고용보험 DB에는 사업장 관련자료 및 피보험자 관련자료, 고용보험사업 수혜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업무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극히 일부분만이 사용되고 있음.
  - 사업장에 대한 생성 및 소멸, 업종·상시인원·자산규모 등의 정보와 함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 보험료 등의 정보 등이 각각의 하위 DB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 지원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 피보험자 관련 자료 역시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실업급여 관련사항, 연령·성별·학력과 직종·임금·근로시간 등 개인에 대한 정보가 피보험자DB, 이력DB 등으로 모아져 있으나 단순히 정보 관리 및 취합의 의미 이외에는 그 역할이 제한적임.
- 고용보험전산망의 DB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 - 특히 각 DB간의 정보 교환 및 활용 등 - 는 '이력DB' 등과 같은 2차 DB의 생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전산망의 2차 DB인 이력DB와 피보험자DB는 불명확한 목적 아래 설계된 것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고용보험자료를 깊이있게 분석·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관리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변수로 하여 각

각의 DB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data-set을 구성하는 방법을 쓰고 있음.

- ☞ 조속한 시일내에 고용보험전산망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거나 활용 가능한 2차 생성 DB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나아가 고용보험 DB만이 아닌 고용정보전산망, 산재전산망 등의 DB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나. 피보험자 정보의 양적 측면

- 고용보험 피보험자DB에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변수는 근속기간, 학력, 연령, 성별, 직종(대분류), 사업장규모, 업종, 입직시 임금 및 소정 근로시간 등이 있으나
  - 최근의 임금, 부양가족수, 전공, 직종(중분류이하), 직업훈련경험, 고용형태 등에 대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DB내 변수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누락 변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력오류 및 지연입력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해야 함.
- ☞ 누락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식 변경, 주기적인 정보의 갱신, 다른 행정전산망(예 : 국세청-임금, 의료보험-부양가족수 등)내의 자료이용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지원금을 받은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파악되고 있지 않음.
  -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 가운데 개인별 수혜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혜자 정보를 관리해야 할 것임.

#### 다. 취업알선정보와의 연계 부재

- 피보험자 정보의 활용측면에서 피보험자의 노동시장 이동과 직업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취업알선에 사용되고 있는 고용정보전산망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
  -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알선이나 각종 노동시장정책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정보는 직업상담원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인·구직자 연결의 적합을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구인표와 구직표의 항목중 상당수는 고용보험 DB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구인·구직자 상담시 고용보험 DB의 자료를 활용한다면, 상담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록> 다른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관리방식

- 다른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관리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각 사회보험간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지만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자신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기여와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봄.
  -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지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로서 양자가 완전히 분리되며, 피보험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임.
  - 국민연금의 경우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되므로 피보험자는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지역거주자임.
  - 의료보험은 세대 단위의 적용으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 본인 외에 피부양자로까지 확대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보험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및 그 가족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각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성격에 따라 피보험자가 상이하며, 피보험자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내용이 상이함.
  - 특히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들은 자료의 활용측면에서 고용보험과는 중요성이 차이가 있는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정보가 국가 전체의 노동시장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반면, 타 사회보험은 관리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사회보험에서 관리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사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정보의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는데,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 피부양자의 정보가 관리되는 점이 타 사회보험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음(부표 II-1 참조).

-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단위인 고용보험에 비하여 피보험자수와 적용범위가 넓지만, 사업장 규모와 일용근로자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고용보험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보다 적용범위가 더 넓음.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과 피보험자 정보의 관리 차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임금정보의 관리임.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총액을 근거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인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반면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임금이 매년 혹은 매월 단위로 관리되고 있음.

<부표 II-1> 4대 사회보험 DB의 원자료 비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p>&lt;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 상호 또는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종, 중소기업여부, 법인등록번호, 직업훈련의무업체, 자산총액, 총사업장수, 총상시근로자수, 총상용근로자수, 주된사업장관리번호</li> <li>- 주된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적용사업(보험사업전체/실업급여)</li> <li>· 건설공사: 공사명, 업종코드, 소재지, 전화, 공사금액(합계, 계약금총액, 재료환산액), 공사기간, 실착공일, 준공예정일, 발주자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고용보험사무조합</li> <li>- 사업장관리번호</li> <li>- 각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별로 위의 내역 작성</li> </ul>	<p>&lt;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보험성립번호</li> <li>- 보험사무조합번호</li> <li>- 신고인(사업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li> <li>- 사업(계속/유기): 명칭, 근로자수(상용, 연인원), 소재지, 사업의 종류(주생산품), 코드, 사업의 기간</li> <li>- 건설공사: 공사명, 구분(도급, 자기공사), 소재지, 공사의 종류(일반건설공사(갑,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궤도신설공사), 코드, 발주자 성명, 발주자 주소</li> <li>· 공사금액: 합계, 계약금총액, 재료환산액, 계약일, 계약서상착공일, 실착공일, 준공예정일</li> <li>- 사업의 개요</li> <li>- 보험관계성립일</li> <li>- 보험사무조합명칭</li> </ul>	<p>&lt;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명칭, 사업의 종류,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당연적용해당일자</li> <li>- 사용자성명</li> <li>- 사무소 또는 사업소: 명칭, 소재지, 근로자수, 피보험대상자수, 사업내용</li> <li>- 평균임금</li> </ul> <p>&lt;사업장관리대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법인/개인, 주소, 전화번호, 업종, 대표자, 설립일, 가입일, 탈퇴일, 변동사항</li> <li>- 피보험자수: 남, 여, 계</li> <li>- 공장및지점, 소재지, 근로자수, 전화번호</li> <li>- 사무실 · 공장현황(자가/임대), 대지 · 건평, 임대료, 임대인의전화주소</li> <li>- 산재보험:가입/미가입, 지정병원</li> <li>- 사업장소유차량</li> <li>- 보증인, 보증보험</li> <li>- 대표자, 부서장, 의보담당자(성명, 주소, 전화)</li> <li>- 탈퇴일자, 탈퇴사유, 이관일자, 이관조합명(기호)</li> </ul> <p>&lt;사업장개요&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번호, 사업장명</li> <li>- 소재지: 본사, 공장, 지점(영업소)</li> <li>- 업종: 업태, 종류</li> <li>- 매월 봉급일: 사무실, 공장</li> <li>- 대표자, 의보담당과장, 의보담당자(성명, 주소, 전화)</li> <li>- 사업장소유차량번호, 약도</li> </ul>	<p>&lt;당연적용사업장해당 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명칭, 소재지,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적용년월일, 사업장형태(법인/개인), 소속의보조합기호, 산재보험가입여부</li> <li>-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령, 전화번호</li> <li>- 일반현황: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계, 남, 여)</li> <li>-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li> <li>- 본점(모사업장)내역: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사용자, 소재지, 전화번호</li> </ul>

<부표 II-1>의 계속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의 료 보 험	국 민 연 금
<p>&lt;고용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계약해지신청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관리번호, 사무조합번호</li> <li>- 사업주: 상호 또는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li> <li>-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li> <li>· 건설공사: 공사명, 소재지, 전화, 총공사액, 공사기간, 착공일, 준공일</li> <li>- 보험관계소멸일</li> <li>- 보험관계소멸 또는 해지신청사유</li> </ul>	<p>&lt;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신청)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보험성립번호</li> <li>- 보험사무조합번호</li> <li>- 신고(청)인(보험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li> <li>- 신고·신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사업/유기사업: 사업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근로자수(상용, 연인원), 별 목적제량</li> <li>· 건설공사: 공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공사의 종류(일반건설공사(갑/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계도건설공사), 소재지,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발주자(성명, 주소)</li> </ul> </li> <li>- 보험관계성립년월일</li> <li>- 보험관계소멸년월일</li> <li>- 보험관계소멸사유</li> </ul>	<p>&lt;의료보험적용사업장탈퇴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명, 관리번호, 업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li> <li>- 근로자수: 계, 남, 여</li> <li>- 탈퇴사유, 탈퇴종류(휴업/폐업/합병/조합원의 탈퇴요구/기타), 탈퇴일자</li> </ul> <p>&lt;직장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갑)&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명칭, 기호, 소재지, 전화번호</li> <li>- 자격취득자수: 계, 남, 여</li> <li>- 피부양자수: 계, 남, 여</li> <li>- 연번, 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급, 보수월액,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근무지, 자격취득(년,월,일), 종전의료보험조합(명칭, 자격구분), 피부양자수</li> </ul> <p>&lt;임의계속피보험자적용신청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번호, 주소, 전화</li> <li>- 퇴직전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재직기간, 계속적용신청기간</li> <li>- 퇴직월을 제외한 전2월간 평균보험료</li> <li>- 보험료총액</li> </ul>	<p>&lt;휴·폐업등사업장탈퇴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수, 가입자수</li> <li>-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령, 전화번호</li> </ul> <p>&lt;신고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사유: 휴업/폐업/통·폐합/기타</li> <li>- 휴업기간, 폐업(통·폐합)일, 탈퇴일</li> <li>- 연금보험료체납기간, 체납액</li> <li>- 통·폐합시 흡수하는 사업장: 명칭, 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용자성명, 주민등록번호</li> </ul> <p>&lt;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역,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전화번호</li> <li>- 일련번호, 성명, 국민연금번호(주민등록번호), 소득월액, 표준소득등급, 자격취득(변동)(부호, 연월일), 특수직종번호, 비고, 총계</li> </ul> <p>&lt;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역,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전화번호</li> <li>- 가입자성명(한글명(한글발음), 외국어(본국어)), 국민연금번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국적코드, 성별(남자/여자)</li> <li>- 소득월액(한화), 표준소득등급, 자격취득부호, 자격취득일(년월일), 특수직종(광원/부원)</li> </ul>
<p>&lt;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관리번호, 사무조합번호</li> <li>-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일자, 사유), 채용일, 학력, 직종, 월급여액</li> </ul>	<p>*피보험자 관리가 필요치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서식은 없음.</p>	<p>&lt;임의계속피보험자적용신청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번호, 주소, 전화</li> <li>- 퇴직전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재직기간, 계속적용신청기간</li> <li>- 퇴직월을 제외한 전2월간 평균보험료</li> <li>- 보험료총액</li> </ul>	<p>&lt;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역,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전화번호</li> <li>- 가입자성명(한글명(한글발음), 외국어(본국어)), 국민연금번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국적코드, 성별(남자/여자)</li> <li>- 소득월액(한화), 표준소득등급, 자격취득부호, 자격취득일(년월일), 특수직종(광원/부원)</li> </ul>
<p>&lt;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보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li> <li>- 사업주: 명칭, 소재지, 전화, 대표자</li> <li>- 전근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관할지방노동관서, 소재지, 전화</li> <li>- 전근일</li> </ul>	<p>*피보험자 관리가 필요치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서식은 없음.</p>	<p>&lt;임의계속피보험자적용신청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번호, 주소, 전화</li> <li>- 퇴직전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재직기간, 계속적용신청기간</li> <li>- 퇴직월을 제외한 전2월간 평균보험료</li> <li>- 보험료총액</li> </ul>	<p>&lt;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역,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전화번호</li> <li>- 가입자성명(한글명(한글발음), 외국어(본국어)), 국민연금번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국적코드, 성별(남자/여자)</li> <li>- 소득월액(한화), 표준소득등급, 자격취득부호, 자격취득일(년월일), 특수직종(광원/부원)</li> </ul>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p>&lt;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등 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관리번호, 사무조합번호</li> <li>- 피보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상실일, 상실사유, 이직표교부(원함/원치않음)</li> <li>- 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계획(있음/없음)</li> <li>- 변경사항신고: 성명, 주민등록번호</li> </ul> <p>&lt;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 확인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관리번호, 사무조합번호</li> <li>-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li> <li>- 피보험자(이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li> <li>-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기간, 기준기간연장(사유, 기간)</li> <li>-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임금지급기초일수</li> <li>- 피보험단위기간12월간의 임금지급상황: 임금지급대상기간, 지급액,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시제외임금액, 차감임금액</li> <li>- 급여기초임금일액, 통상임금(산정내역)</li> </ul>	<p>*피보험자 관리가 필요치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서식은 없음.</p>	<p>&lt;직장피보험자자격상실 신고서(갑)&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명칭, 기호, 소재지, 전화번호</li> <li>- 자격상실자수: 계, 남, 여</li> <li>- 피부양자수: 계, 남, 여</li> <li>- 의료보험증회수: 총대상, 회수, 미회수</li> <li>- 원격지의료보험증회수: 총대상, 회수, 미회수</li> <li>- 연번, 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격취득(년,월,일), 상실사유, 의료보험증(반납/미반납), 확인</li> </ul>	<p>&lt;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역,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전화번호</li> <li>- 일련번호, 성명, 국민연금번호(주민등록번호), 자격상실(변동)(부호, 연월일), 비고, 총계</li> </ul> <p>&lt;임의가입자(가입/탈퇴) 신청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성명, 국민연금번호(주민등록번호), 연령, 전화번호</li> <li>- 주소, 부호, 우편번호</li> <li>- 가입신청시기제사항: 직업, 부호, 월소득액, 재가입자 반환일시금(수령/미수령)</li> </ul>

<부표 II-1>의 계속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의 료 보 험	국 민 연 금
<p>&lt;개산/개산증기/개산추가/확정)보험료보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관리번호</li> <li>- 고용보험사무조합</li> <li>-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 상시근로자수, 보험관계성립일, 사업종료예정일, 증가·추가시점, 대표</li> <li>- 사업주: 명칭, 소재지, 전화, 총상시근로자수, 직업훈련의무업제(해당/비해당), 중소기업(해당/비해당), 자산총계</li> <li>- 확정보험료: 계,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산정기간, 요율, 보험료액, 훈련비용정산액, 납부할액, 납부한액, 부족액, 초과액(충당액/반환액)</li> <li>- 개산보험료: 계,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산정기간, 임금총액, 요율, 보험료액, 훈련비용공제액, 납부할액, 증가전·추가전액, 추가납부할액</li> <li>- 임금총액산정내역</li> <li>· 일반사업: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산정월수, 1인당평균임금, 월평균임금, 임금추정액</li> <li>· 건설공사: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임금추정액, 총공사액, 계약금액, 재료의 시가환산액,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노무비율, 임금총액추정액)</li> <li>-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 임금총액: 월(1~12), 실업급여(인원, 지급한임금총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인원, 지급한임금총액), 월별상시근로자수)</li> <li>- 건설공사: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내역(총공사금액, 당년도 시공추정액, 익년도 이월예정액)</li> </ul>	<p>&lt;개산/증기/확정)보험료 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가입자: 지사, 기호, 번호</li> <li>- 사무조합번호</li> <li>- 신고인(사업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보험관계성립연월일, 사업종료(예정)연월일, 상용근로자수(또는 연인원)</li> <li>- 사업: 명칭, 전화, 소재지, 사업의 종류, 주생산품명(제공되는서비스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li> <li>- 확정보험료: 산정기간, 확정공사금액(기성액), 임금총액, 보험료율, 확정보험료, 납부한개산보험료액, 차액(부족액, 초과액, 충당액/반환액)</li> <li>- 개산/개산증기보험료: 산정기간, 임금총액, 보험료율, 개산(증가후개산)보험료액, 증가전개산보험료액, 추가납부액</li> <li>- 분할납부여부, 납부회수</li> <li>- 개산/증기보험료임금추정액산정내역: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합계; 1인당 추정임금액(평균월액), 근로자추정인원(월평균인원), 산정되어야할 월 수, 임금추정액)</li> <li>- 건설공사임금총액추정액의산정내역: 총공사금액(계, 계약금액, 재료의 시가환산액), 임금총액의 추정액,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노무비율, 임금총액의 추정액)</li> <li>-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 임금총액: 월(1~12), 총인원, 지급한 임금총액</li> </ul>	<p>&lt;피보험자표준보수월액변경 신고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명칭, 소재지, 성명, 전화번호</li> <li>- 신고대상자수: 계, 남, 여</li> </ul> <p>&lt;피보험자표준보수월액변경 일람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명칭, 기관</li> <li>- 연번, 증번호, 성명, 성별, 현행등급, 변경보수월액(합계, 기본급, 제수당, 기타), 변경사유, 변경일자, 표준보수월액, 변경등급, 적용월(년,월)</li> </ul> <p>&lt;피보험자표준보수월액변경 일람표(3개월 평균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명칭, 기관</li> <li>- 연번, 증번호, 성명, 성별, 현행등급, 보수월액(산정기초월, 근무일수, 기본급, 제수당, 계, 월평균), 변경사유, 변경일자, 표준보수월액, 등급, 적용(년,월)</li> </ul>	<p>&lt;국민연금보험료분기납(신규/해지)/선납(신규/해지)신청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성명(가입자), 국민연금번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li> <li>· 주소, 우편번호</li> <li>- 분기납희망자(지역가입자에 한함): 분기납희망기간</li> <li>- 선납희망자: 선납희망기간, 선납총액, 월보험료, 보험료총액, 감액총액, 국고보조총액</li> </ul>

	공 통 사 항	고용보험에만 있는 사항	산재보험에만 있는 사항	
사 업 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번호, 보험사무조합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고용보험(보험관계 소멸신고서/보험계약해지신청서)</li> <li>-상호 또는 법인명칭, 소재지, 업종(주생산품), 업종코드, 중소기업해당여부, 직업훈련의무업체해당여부, 자산총액, 총사업장수, 총 상시근로자수, 총상용근로자수, 주된사업장관리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재보험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산재보험상보험관계소멸(신고/신청)서</li> <li>-산재보험성립번호</li> </ul>	
사 업 장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소재지, 근로자수(상용, 연인원), 업종(주생산품), 업종코드 -건설공사: 공사명, 소재지, 공사금액(합계, 계약금총액, 재료환산액), 실착공일, 준공예정일, 발주자성명, 발주자주소 -보험사무조합명칭 -보험관계소멸일 -보험관계소멸 또는 해지신청사유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적용사업(보험사업전체/실업급여) -사업장관리번호 -각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별로의 내역 작성	-사업의 기간 -보험관계성립된월일 -건설공사: 구분(도급, 자기공사), 공사종류(일반건설공사,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시설공사), 코드, 사업의 개요, 계약년월일 -별목적제량 -건설면허번호	
피 보 험 자	(산재보험에는 피보험자자격에 관한 서식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등신고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li> <li>-사업장 관리번호, 사무조합번호</li> <li>-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일자, 사유), 채용일, 학력, 직종, 월급여액, 주소, 전화, 상실일, 상실사유, 이직표교부(원함/원치않음)</li> <li>-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계획(있음/없음)</li> <li>-변경사항신고: 성명, 주민등록번호</li> <li>-피보험자(이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li> <li>-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기간, 기준기간연장(사유, 기간)</li> <li>-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임금지급기초일수</li> <li>-피보험단위기간12월간의 임금지급상황: 임금지급대상기간, 지급액,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시제외임금액, 차감임금액</li> <li>-급여기초임금일액, 통상임금(산정내역)</li> </ul>	(산재보험에는 피보험자자격에 관한 서식이 없음)	
정 수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산/개산증기/개산추가/확정)보험료보고서</li> <li>-상시근로자수, 보험관계성립일, 사업종료예정일, 증가·추가시점, 대표명</li> <li>-건설공사: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내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산/증기/확정)보험료신고서</li> <li>-사업의 종류, 주생산품명(서비스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li> </ul>
	사업주	-소재지, 전화, 사업종료예정일	-명칭, 총상시근로자수, 직업훈련의무업체 해당여부, 중소기업해당여부, 자산총계	-성명, 보험관계성립연월일, 상용근로자수(또는 연인원)
	확정 보험료	-산정기간, 임금총액	-각 사업별로 보험료율, 보험료액, 훈련비용정산액, 납부할액, 납부한액, 부족액, 초과액(충당액/반환액)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 임금총액: 월, 사업별 인원, 지급한임금총액, 월별상시근로자수	-확정공사금액(기성액), 보험료율, 확정보험료, 납부한 개산보험료액, 차액(부족액, 초과액, 충당액/반환액)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 임금총액: 월, 총인원, 지급한 임금총액
개산 보험료	-산정기간, 임금총액	-각 사업별 보험료율, 보험료액, 훈련비용공제액, 납부할 액, 증가전·추가전 액, 추가납부할 액	-보험료율, 개산(증가후개산)보험료액, 증가전개산보험료액, 추가납부 액, 분할납부여부, 납부회수	
일반 총액	-1인당추정임금액(평균월액), 근로자추정인원(월평균인원), 산정되어야 할 월수, 임금추정총액	-사업별로 구분함.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를 구분함.	
건설 내역	-임금추정액, 총공사금액(계약금액, 재료시가환산액,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노무비율, 임금총액추정액)	-사업별로 구분함.		

<부표 II-1>의 계속

		공 통 사 항	고용보험에만 있는 사항	국민연금에만 있는 사항
적	관계성립 / 해지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고용보험(보험관계소멸 신고서/보험계약해지신청서)</li> <li>-상호 또는 법인명칭, 업종, 중소기업여부, 법인등록번호, 직업훈련훈련의무업체 해당여부, 자산총액, 총사업장수, 총상시근로자수, 총상용근로자수, 주된사업장관리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및 휴·폐업등사업장탈퇴신고서</li> <li>-연령</li> </ul>
	주된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칭, 소재지, 사업의종류(업태, 종목), 전화, 사업장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적용사업(보험사업전체/실업급여), 고용보험성립일, 고용보험사무조합</li> <li>-건설공사: 공사명, 업종코드, 소재지, 전화, 공사금액(합계, 계약금총액, 재료환산액), 공사기간, 실착공일, 준공예정일, 발주자명, 발주자주소</li> <li>-각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별로 위내역 작성</li> <li>-보험관계소멸일, 보험관계소멸 또는 해지신청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년월일, 소속의보조합기호, 산재보험가입여부, 사업장형태(법인, 개인),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계, 남, 여)</li> <li>-분리적용사업장해당여부</li> <li>-본점(모사업장)내역: 사용자</li> <li>-신고사유: 휴업/폐업/통·폐합/기타</li> <li>-휴업기간, 폐업(통·폐합)일, 탈퇴일</li> <li>-연금보험료체납기간, 체납액</li> <li>-통·폐합시 흡수하는 사업장: 명칭, 기호, 소재지, 전화, 사용자성명, 주민등록번호</li> </ul>
용	자격취득 / 상실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장관리번호(기호)</li> <li>-일련번호,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국민연금번호), 월급여액(소득월액)자격취득(일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등신고서</li> <li>-사무조합번호, 채용일, 자격취득(일자), 학력,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종별 대분류코드를 기재)</li> <li>-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계획 유무</li> <li>-변경사항신고: 성명, 주민등록번호</li> <li>-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기간, 기준기간연장(사유,기간)</li> <li>-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임금지급기초일수</li> <li>-피보험단위기간12월간의 임금지급상황: 임금지급대상기간, 지급액,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시제외임금액, 차감임금액</li> <li>-급여기초임금일액, 통상임금(산정내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및 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li> <li>-행정구역, 사업장명칭, 전화번호</li> <li>-자격취득(일자), 표준소득등급, 특수직종번호(광업법에 의한 광원이거나 선원법에 의한 부원일 경우에 가록), 비고, 총계</li> <li>-자격상실(변동)부호,연월일, 비고, 총계</li> </ul>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00년도(개산/개산증가/개산추가/확정)보험료 보고서</li> <li>-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사무조합</li> <li>-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 상시근로자수,보험관계성립일, 사업종류예정일, 증가·추가시점, 대표</li> <li>-사업주: 명칭, 소재지, 전화, 총상시근로자수, 직업훈련의무업체(해당/비해당), 중소기업(해당/비해당), 자산총계</li> <li>-확정보험료: 계,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산정기간, 요율, 보험료액, 훈련비용정산액, 납부할액, 납부한액, 부족액, 초과액(충당액/반환액)</li> <li>-개산보험료: 계,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산정기간, 임금총액, 요율, 보험료액, 훈련비용공제액, 납부할액, 증가전·추가전 액, 추가납부할액</li> <li>-임금총액산정내역</li> <li>· 일반사업: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산정월수, 1인당평균임금, 월평균임금, 임금추정액</li> <li>· 건설공사: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임금추정액, 총공사액, 계약금액, 재료의 시가환산액,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노무비율, 임금총액추정액)</li> <li>-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 임금총액: 월(1~12), 실업급여(인원, 지급한임금총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인원, 지급한임금총액), 월별상시근로자수</li> <li>-건설공사: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내역(총공사금액, 당년도 시공추정액, 익년도 이월예정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년00월분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액 산출내역</li> <li>-당월분금액(기여금·부담금/퇴직전환금), 소급분금액, 전월차감잔액, 수납충당액, 납입고지액, 차감잔액</li> <li>-사업장명칭, 납부자번호</li> <li>-당월분연금보험료 명세표: 등급, 보험료, 인원, 금액</li> </ul>
수				

		공 통 사 항	고용보험에만 있는 사항	의료보험에만 있는 사항
적	관 계 성 립 / 해 지 신 고 서	<p>사업주</p> <p>-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명칭, 소재지, 업종(형식은다름)</p>	<p>●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고용보험(보험관계 소멸신고서/보험계약해지신청서)</p> <p>-상호또는법인명칭, 업종코드, 중소기업해당여부, 법인등록번호, 직업훈련훈련의무업체해당여부, 자산총액, 총사업장수, 총상시근로자수, 총상용근로자수, 주된사업장관리번호</p>	<p>●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 신고서 및 의료보험적용사업장탈퇴신고서 및사업장관리대장 및 사업장개요</p>
	주된사업장	<p>-명칭, 소재지, 전화, 사업장 관리번호(기호), 사업자등록번호, 공장 및 지점의 소재지, 근무자수, 전화번호</p>	<p>-업종,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적용사업(보험사업진척/실업급여), 고용보험성립일, 고용보험사무조합</p> <p>-건설공사: 공사명, 업종코드, 소재지, 공사금액(합계, 계약금총액, 재료환산액), 공사기간, 실착공일, 준공예정일, 발주자명, 발주자주소</p> <p>-보험관계소멸일, 보험관계소멸 또는 해지신청사유</p>	<p>-당연적용해당일자, 피보험대상자수, 사업내용, 설립일, 가입일, 탈퇴일, 변동사항, 피보험자수(계,남,여), 사무실·공장현황(자가/임대),대지·건평, 임대료, 임대인의 전화및주소, 산재보험가입여부와 지정병원, 사업장형태(법인/개인), 사업장소유차량, 보증인, 보증보험, 의보담당자</p> <p>-탈퇴일자, 탈퇴사유(휴업/폐업/합병/조합원의탈퇴요구/기타), 이관일자, 이관조합명</p>
용	자 격 취 득 / 상 실 신 고 서	<p>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 고(보수월액)</p>	<p>●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p> <p>-사업장관리번호, 사무조합번호</p> <p>-자격취득일자, 채용일, 학력, 직종</p> <p>-전근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관할지방노동관서, 소재지, 전화, 전근일 -사업주의 대체인력채용계획 유무 -변경사항신월급여액(고: 성명, 주민등록번호)</p> <p>-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기간, 기준기간연장(사유,기간)</p> <p>-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임금지급기초일수 -피보험단위기간12월간의 임금지급상황: 임금지급대상기간, 지급액,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시제외임금액, 차감임금액</p> <p>-급여기초임금일액, 통상임금(산정내역)</p>	<p>●직장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갑) 및 직장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갑)</p> <p>-사업장: 명칭, 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자격취득자수/자격상실자수(계,남,여), 피부양자수(계,남,여)</p> <p>-피보험자: 증번호, 등급,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근무지, 자격취득(년,월,일), 종전의료보험조합(명칭, 자격구분), 피부양자수, 상실사유</p> <p>-의료보험증회수: 총대상, 회수/미회수, 의료보험증(반납/미반납)</p>
	정	<p>●고용보험 00년도(개산/개산증가/개산추가/확정)보험료 보고서</p> <p>-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사무조합</p> <p>-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 상시근로자수,보험관계성립일, 사업종료예정일, 증가·추가시점, 대표</p> <p>-사업주: 명칭, 소재지, 전화, 총상시근로자수, 직업훈련의무업체(해당/비해당), 중소기업(해당/비해당), 자산총계</p> <p>-확정보험료: 계,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산정기간, 요율, 보험료액, 훈련비용정산액, 납부할액, 납부한액, 부족액, 초과액(총당액/반환액)</p> <p>-개산보험료: 계,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산정기간, 임금총액, 요율, 보험료액, 훈련비용공제액, 납부할액, 증가전·추가전 액, 추가납부할 액</p> <p>-임금총액산정내역</p> <p>· 일반사업: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산정월수, 1인당평균임금, 월평균임금, 임금추정액</p> <p>· 건설공사: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임금추정액, 총공사액, 계약금액, 재료의 시가환산액,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노무비율, 임금총액추정액)</p> <p>-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 임금총액: 월(1~12), 실업급여(인원, 지급한임금총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인원, 지급한임금총액), 월별상시근로자수)</p> <p>-건설공사: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내역(총공사금액, 당년도 시공추정액, 익년도 이월예정액)</p>	<p>●피보험자표준보수월액변경신고서 및 피보험자표준보수월액변경일람표</p> <p>-변경보수월액(합계, 기본급, 제수당, 기타), 변경사유, 변경일자, 표준보수월액, 변경등급, 적용월(년,월)</p> <p>-(정수는 고지서에 의함)</p>	
수				

### Ⅲ. 외국의 피보험자 관리제도

- 제Ⅲ장에서는 일본과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어떤 피보험자 관련 정보가 수집·관리되는가를 살펴볼 것임.
  - 일본의 경우에는 문헌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들이 수집·관리되는지 정리하였음. 반면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관련해서는 문헌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인터넷을 통해 실업보험을 관리하거나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기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매뉴얼 등을 통해서 피보험자 관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음.

#### 1. 일본의 피보험자 관리제도

- 일본의 경우 한국과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 및 피보험자 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거의 유사함. 사업장단위로 피보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시스템도 개산·확정방식으로 한국의 현행 제도와 유사함.
  - 일본과 한국의 피보험자 관리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일본의 경우 피보험자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임. 각 유형별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기준과 급여지급기간도 다르게 운영됨.
  - 피보험자의 종류는 크게 一般被保險者와 高年齡繼續被保險者, 短期雇用特例被保險者, 日雇勞働被保險者의 4종류로 나뉨. 일반피보험자와 고연령계속피보험자 가운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短時間勞働被保險者로 다시 구분되어 관리됨.
  - 적용 및 피보험자 관련 전산정보는 노동성 직업안정국 산하의 노동시장센터 업무실에서 관리함(정연택, 1997).

- 일반피보험자와 고연령계속피보험자 및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는 「雇用保險被保險者証」과 고용보험 DB를 통해 관리되고, 일고노동피보험자는 「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을 통해 관리됨(황덕순, 2000).
  - 일용직이 피보험자 수첩을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관리된다는 점 이외에도, 「고용보험피보험자증」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음.
  - 일본에서 피보험자증이 사용되는 이유는 국민개인마다 부여된 고유의 ID가 없기 때문임.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되면 「피보험자번호」가 부여되고, 피보험자번호에 기초해서 각 개인의 피보험기간 및 구직급여 수급 등과 관련된 고용보험정보가 DB로 관리됨. 고용보험피보험자증은 일단 피보험자가 된 후에는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직하여 다른 사업체에 취업할 경우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 피보험자증을 분실했을 경우 피보험자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에 기초해서 피보험자증이 재교부되지만 피보험자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과거의 고용보험 관련기록은 사라짐.
  - 피보험자증에는 피보험자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교부연월일, 피보험자 유형구분란 등이 있음. 직장을 옮기거나, 피보험자 유형이 바뀔 경우 피보험자증이 갱신됨. 이 때 피보험자증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나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됨.
  - 일용직은 일고노동피보험자가 되는 요건을 충족하여 「일고노동피보험자자격취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고노동피보험자 임의가입이 인가된 경우 「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을 공공직업안정소장으로부터 교부받게 됨. 수첩을 발급받은 후 일용직의 피보험자로서의 이력은 수첩에 「고용보험인지」를 첨부하고 사업주가 날인하는 방식으로 관리됨.
  
-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지만 피보험자가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피보험자 관리와 관련된 각종 신고절차나 정보관리가 한국보다 더 복잡함.
  - 한국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주를 이루고, 전근이나 사

업장 변경 신고가 있는 반면, 일본은 여기에 더해서 피보험자 유형이 바뀌거나 출향될 때, 휴업시에 1세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60세에 도달한 경우 관련된 신고가 이루어짐.

○ 각 신고시에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격취득신고서(구분변경신고서2) : 일반피보험자 또는 단기고용특례 피보험자가 된 경우
  - 피보험자 번호 : 다음 정보에서 재취득 및 구분변경인 경우에만 기재
  - 신규/재취득(구분변경) 여부
  - 성명 : 한자 및 カタカナ
  - 성별
  - 생년월일 : 생년은 연호와 연도에 따라 입력
  - 사업장 번호
  - 자격취득일 : 취득연도는 연호(平成)에 따른 연도를 기재
  - 피보험자가 된 사유(피보험자구분변경표시) : ①신규고용(학졸)/②신규고용(기타)/③일용직에서 전환/④기타/⑤구분변경/⑧출향원으로서의 복귀(65세 이상)
  - 임금형태 : ①월급/②주급/③일급/④시간급/⑤기타<sup>3)</sup>
  - 임금월액
  - 고용형태 : ①일고/②파트타임/③계절적고용/④기타
  - 직종 : 직종대분류에 따라 기재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계약기간 유무 : 있는 경우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조항 유무 기재, 없는 경우 1년 이상 고용할 전망이 있는가 여부를 기재
  - 계약기간을 정했거나 정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고용전망이 없는 경우 그 이유 : 기술형으로 기재
  - 이외에 본인의 확인인을 받아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직업안정기관에서 추가로 기재하는 항목이 있음.

3) 진한 글씨는 한국에는 수집되지 않은 경우임.

- **피보험자구분변경신고** : 일반피보험자나 고연령계속피보험자에서 피보험자 구분이 변경된 경우(단시간노동피보험자가 단시간노동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되거나, 단시간노동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단시간노동피보험자가 된 경우).
  - 2가지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함. 첫 번째는 자격취득신고서와 동일한 양식인 「구분변경신고서 2」에 구분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임. 기재하는 항목은 자격취득신고서와 동일함. 두 번째는 자격취득확인통지서가 교부될 때 교부된 「자격상실·전출·성명변경·구분변경신고서」임. 여기서는 두 번째 서식에 대해서만 살펴봄.
  - 교부된 구분변경신고서에는 이미 피보험자의 기본정보 및 사업장 번호등이 인쇄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정보만 추가로 기재함.
    - 구분변경연월일
    - 구분변경표시
    - 피보험자 구분이 생긴 원인 : 기술형으로 기재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자격취득확인통지서가 교부될 때 교부된 「자격상실·전출·성명변경·구분변경신고서」를 이용하여 작성.
  - 이직연월일
  - 상실사유 : ①이직 이외의 이유(사망, 재적출향, 출향원으로서의 복귀 등 기타 이직이외의 사유)/②천재지변 등,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계약기간만료, 임의퇴직, 위의 경우나 사업주 사유 이외의 사유에 의한 이직(정년퇴직이나 이사로의 취임 등), 이적출향/③해고나 사업주 권유에 의한 임의퇴직등 사업주 사유에 의한 이직
  - 이직표 교부 희망여부
  - 피보험자 주소
  - 상실사유 : 기술형으로 기재(예, 잔업이 많아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 희망)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이직증명서**

- 피보험자번호
  - 사업소번호
  - 성명 : 한자 및 カタカナ
  - 이직년월일
  - 사업체 소재지
  - 이직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이직사유 : 해고/도산에 의한 퇴직/계약기간만료/사업주권유에 의한 퇴직/정년(00세)/정년(00세)후의 근무연장 또는 재고용의 종료(00세)/기타. 기술형으로 구체적인 사유도 기재
  - 이직전 12개월간의 월단위 임금지불기초일수 및 월급여액
  - 이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와 휴업시에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월액증명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함.
  - 60세 이후 최초로 이직한 경우 이직시 임금과 60세의 임금을 비교해서 후자가 높은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함.
  - 휴업시에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업급여를 지급함.
- 일본 피보험자 관리제도는 피보험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중요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한국의 피보험자 관리제도와 유사한 한계를 갖고 있음.
- 한국과 유사한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확인하지 않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 자격취득시 한국에서는 수집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수집되는 정보 :
    - 임금형태
    - 고용형태
    - 계약기간 유무 및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조항 유무,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1년 이상의 고용전망 여부
    - 계약기간을 정했거나 정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고용전망이 없는 경우 그 이유 : (기술형)

※ 기재내용을 본인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자격취득시 한국에서는 수집하지만 일본에서는 수집되지 않는 정보도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학력과 장애유형/장애등급임.

☞ 한국은 일본과 달리 피보험자 유형을 복잡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한국에서는 수집하지 않고 있는 고용형태나 임금형태, 계약기간과 관련된 정보들은 개인의 노동시장 경력에 대한 관리나 거시적인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집·관리되어야 할 것임.

## 2. 미국·캐나다·영국의 피보험자 관리제도

- 미국의 경우 직업안정기관(SESA, State Employment Security Agency)을 통해 정보가 일차적으로 수집·관리되며,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국세청을 통해 정보가 수집됨.
  - 미국 경우 SESA에 분기별로 사용자가 제출하는 QCR(Quarterly Contribution Report)를 통해 임금 및 조세, 사회보장 기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함.
    - 여기에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ARS(Annual Refiling Survey), QUI(Quarterly Unemployment Insurance Name and Address File), MWR(Multiple Worksite Report), RFEW(Report of Federal Employment and Wages)의 정보를 통합한 ES-202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에는 National Insurance 가입 사업장과 개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NIRS(National Insurance Recording System)을 운영하고 있음.
    - 제도변화에 대응하여 NIRS1을 NIRS2로 개편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
- 조세나 사회보장기여가 모두 조세징수기구를 통해 징수·관리되므로 주

기적으로 피보험자의 소득과 관련된 정보가 갱신되고 있음. 피보험자와 관련해서 수집되는 정보와 갱신 여부는 다음 <표 III-1>과 같음.

- 미국의 경우 분기별로 제출되는 QCR을 통해 임금관련 정보가 갱신됨.
-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년 1회 임금 및 조세, 사회보장기여 관련 정보를 제출함.

- 미국의 경우에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은 실업보험 제도의 운용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우는 각종 미거시경제학적인 연구의 기초자료나 서베이를 위한 표본틀 및 검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임.
    -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는 ES-202자료를 GDP의 개인소득을 산출하는 자료로 활용함(Farmer and Searson, 1995).
    - ES-202를 통해 산출된 BEL(Business Establishment List)는 대부분의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 프로그램을 위한 표본틀로 활용됨(Searson and Farmer, 1997).」
    - ES-202의 통계적 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병유(2000) 참조.
- 영국의 경우에 피보험자들의 자격관리 및 조세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근로자들이 이직할 경우에 몇 개의 서식을 동시에 작성하여 세무서, 이직자 본인, 새로운 고용주가 받을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이직할 때 사용주는 P45 서식을 작성하게 됨. P45 서식은 PART 1(세무서 신고용), PART 1A(이직자 보관용), PART 2(새로운 고용주 보관용), PART 3(새로운 고용주의 세무서 신고용)으로 구성됨.
    - P45 서식에는 공통적으로 이직자의 국민보험번호 및 급여·조세관련 기록이 포함되어 있음.
  - 이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새로운 사용자는 P45서식의 PART 2는 보관하고, PART3에는 새로운 근로자의 사면(급여명부번호), 고용일자, 직종, 부서 등을 기록·신고함.

<표 III-1> 영국·미국·캐나다의 피보험자 관련 정보 관리내역

		영 국	미 국	캐나다
정보수집기관		Inland Revenue	SESA ⇒ ETA	HRDC, CCRA
수집주기		연 1회 및 취업·이직시	분기 1회 및 취업·이직시	연 1회 및 취업·이직시
기본 인적사항		국민보험번호(NIN),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회보장번호(SSN)·의료보험코드(HIC), 이름, 주(州)코드	사회보험번호(SIN), 이름, 주소
근무기간 관 련	취업일·이직일 <sup>1)</sup>	○	○	○
	피보험기간 <sup>2)</sup>	-	○	○
임금 관련 <sup>4)</sup>	임금 유형 <sup>3)</sup>	-	○	○
	총 임금	◎	◎	◎
	고용보험 적용 대상 임금	◎	◎	◎
	과세대상소득	◎	◎	◎
	조세, 사회보장 기여금	◎	◎	◎
직종		○	-	-
고용형태 <sup>4)</sup>		○	△	-
부서		○		
실근로시간		-	◎	-

주 : ◎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정보, ○ 취업·이직시 수집되는 정보, △ 불충분한 정보

- 1) UK 및 US, 취업일 및 이직일 ; CA, 업무개시일, 임금지급최종근무일(last day for which paid), 최후임금지급기간최종일(final pay period ending date)
- 2) US, 총근로시간 (weeks/hours 각각 기입), CA : 총피보험근로시간(total insurable hours)
- 3) UK, 임금유형을 기입하는 별도 항목은 없으나 주(週)별/월(月)별로 임금 및 납세실적을 기입하게 되어 있음 ; US, wage plan code (주(州)에 따라 생략 가능) ; CA, 주급/격주급/반월급/월급/연간13회급/커미션 등으로 분류
- 4) 영국의 경우 주·월단위 고용 여부, 미국의 경우 수습여부(probationary code)가 기록됨.

자료 : 영국 국세청 각종 양식, [www.inlandrevenue.gov.uk/employer/download.html](http://www.inlandrevenue.gov.uk/employer/download.html)

미국 ICESA, ICESA Format, [www.icesa.org/articles](http://www.icesa.org/articles)

캐나다 HRDC, Employment Insurance 2000 Guide for Employers, [www.nf.hrdc-drhc.gc.ca](http://www.nf.hrdc-drhc.gc.ca), CCRA, <http://www.ccra-adrc.gc.ca/E/pbg/tf/t4contbq/0762.pdf>

- 외국의 경우 조세와 고용보험기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보험자의 임금과 관련된 정보가 갱신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조세와 고용보험기여가 분리되어 있고, 조세관련 정보는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에 전달되지 않고 있음.
- ☞ 사업주가 매년 국세청에 신고하는 피용자별 임금관련 정보가 직업안정기관에 전달될 경우 한국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정보가 갱신될 수 있을 것임.
  - 국세청의 DB로부터 바로 고용보험 DB로 자료를 전송받아서 관리하는 방안.
  - 사업주가 매년 피용자별 임금정보를 직업안정기관에도 보고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에서 별도로 입력·갱신하는 방안.

## IV.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방안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의 도입방안은 단순히 관리시스템의 개편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피보험자의 고용 관련 정보의 확충·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새로운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를 통해 축적된 정보들은 국가 인력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직업안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중장기적으로 각종 사회보험의 통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피보험자 관리제도의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의미도 갖게 될 것임.
    - 고용보험에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동관련 사회 보험에도 비로소 개인별 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는 의미를 갖게 됨.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리되는 정보의 측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임.
    - 고용보험에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용보험 DB를 통해 피용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회보험 DB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임.
  
- 피보험자 개인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보험 DB를 구성하는 한 DB로서 각 개인의 고용보험 관련 정보 및 노동시장이력을 하나의 관측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이는 현행 이력 DB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차원보다는 개인별 관리제도를 통해 구축되는 정보, 즉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함.
  - 새로운 피보험자별 DB의 총구성관측치수는 「현재의 피보험자 총수 + 과거에 피보험자였던 자의 총수」가 될 것임.

- 이를 위한 개선과제는 ①현재 수집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 어떤 정보들을 어떤 DB에서 수집·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②각 DB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개인단위로 관리하는 DB로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고용보험 DB의 정보가 개인별로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할 경우 개인의 정보가 집약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부터 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정보에 대해 접근할 때 - 통계적인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 승인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피보험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함.
  - 첫 번째로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를 구축할 경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봄. 이는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목적과 관련된 것임. 여기에서는 구축된 정보의 통계적 활용 및 직업안정서비스에서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다룸.
  - 두 번째는 개인별 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각 피보험자와 관련해서 확충되어야 할 정보와 각 정보의 분류방식임. 주로 확충되어야 할 정보 및 정보의 갱신주기에 대해서 다룸.
  - 세 번째는 정보의 수집 및 관리방안임. 여기에서는 피보험자의 입·이직시의 정보관리, 즉 고용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방식과 전산양식을 통한 신고의 확대방안도 다룰 것임.
  - 네 번째는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의 도입이 고용보험 제도를 구성하는 다른 여러가지 제도의 개선이나 합리화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임. 특히 신고된 개인의 임금정보를 활용한 고지·월납 방식으로서의 징수제도 전환과 각종 급여·지원금의 산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다룸.
  - 다섯 번째는 고용보험 DB를 통해 관리되는 정보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입력오류 및 지연입력 문제 해결의 필요성임.

## 1. 고용보험 DB 정보의 활용

- 개인별 관리제도를 통해 구축된 고용보험 DB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활용될 수 있음. 첫 번째는 DB로 관리되는 정보를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통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임. 두 번째는 이 정보를 피보험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에 활용하는 것임.
-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정보들이 확충될 경우 고용보험 DB의 통계적인 활용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피보험자로 관리되는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혹은 피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인 활용가능성은 매우 높음. 특히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전수표본이라는 점이 통계적인 활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임.
  - 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조사를 위한 표본틀로 활용되거나 일자리 창출·소멸을 비롯한 각종 통계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임.
    - 한국의 경우에 이러한 분야로의 활용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직종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수집·관리할 경우 산업·직업별 일자리의 생성·소멸 및 현재 상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함. 이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산업·직업별 인력수급전망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직업능력개발사업 이수자의 노동시장 행태에 관한 정보를 병행해서 분석할 경우 인력수급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임.
  - 고용 및 임금관련 통계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 DB의 정보들은 각종 조사들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보정하는 준

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특히 고용관련 통계의 개선이 기대됨. 현재 고용관련 통계는 가구조사인 인구 및 주택센서스,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고용구조 통계조사에 의존하고 있음. 피보험자 관리를 통해 노동력 수요를 구성하는 기업 차원에서 고용계약 유무 및 계약기간 관련 정보, 소정근로시간 관련 정보들을 구축할 경우 고용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임.

- 피보험자 관리를 통해 축적된 고용보험 DB의 정보를 직업상담시에 직업상담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고용정보전산망 DB의 정보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
  - 과거의 노동시장 이력에 관한 기록 - 과거의 고용기간 및 회수, 고용형태, 임금수준, 직종, 훈련수혜 여부 등 - 은 실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확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게 될 것임.
  - 이와 관련해서 고용보험전산망을 재구축하거나 활용 가능한 2차 생성 DB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고용보험 DB만이 아닌 고용정보전산망, 산재전산망 등의 DB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고용보험 DB에 축적된 정보를 직업안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하는 외국의 사례는 찾기 어려움. 그러나 영국의 사례는 몇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평가됨.
  - 영국의 경우 구직자 급여(Job Seeker's Allowance : JSA)는 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산하의 급여기구(Benefits Agency)에서 담당하며,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은 고용청(Employment Service) 산하의 고용센터(Jobcenter)에서 담당함. 현재 고용센터에서 두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중임.
  - 영국에서는 보험료의 징수업무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제3장에서 살펴본 NIRS의 정보는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에만 사용되고 있음.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원은 한국의 고용정보전산망과 유사한 노동시장시스템(Labour Market System)과 급여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구직

자급여관리시스템(JSA Payment System)을 동시에 사용하여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함.<sup>4)</sup>

- 구직자급여관리시스템은 실업급여 관리 관련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한국의 고용보험 DB의 하위그룹에 속함.
- 구직자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구직자 및 급여에 관한 상세정보를 직업상담원이 파악할 수 있으며, 구직자가 급여수급 및 상담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중요한 상담결과를 전산망에 기록하여 매번 상담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은 현재 구인구직정보 수집 및 구인구직을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고용청현대화계획」(Modernising ES)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새로운 근로연계복지기구(Welfare to Work Agency)를 출범시킬 계획임.

- 또한 근로연계복지기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고용청, 급여기구, 복지부, 국세청 사이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임([www.employmentservice.gov.uk/down-loads/mes.pdf](http://www.employmentservice.gov.uk/down-loads/mes.pdf)).

## 2. 피보험자 관련 정보의 확충

○ 현재 각 피보험자별로 수집·관리되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음.

-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장 번호(이를 통해 사업장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성명·주민등록번호
  - 피보험자격취득일자/채용일자
  - 취득사유
  - 성별
  - 학력
  - 직종(대분류)

4) 영국의 Jobcenter(Luton 소재) 방문 면접 결과.

- 월평균임금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채용경로
  - 장애유형
  - 장애등급
  - 이직시에 추가로 확인되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음.
    - 피보험자 주소/전화번호
    - 상실사유
    - 이직일
    - (이직시 평균임금) : 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만 확인.
  -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할 때에는 피보험자 개인별로 DB에서 관리되는 정보는 없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다음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DB로 관리됨.
    - 근로자 학자금 대부
    - 수강장려금
    - 실업자 재취직 훈련
- 외국에서 한국과 달리 추가로 수집·관리하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보험자 관리를 하고 있으나 수집되는 정보는 더 많음. 피보험 자격취득시 한국에서는 수집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수집되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음.
    - 임금형태
    - 고용형태
    - 계약기간 유무 및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조항 유무,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1년 이상의 고용전망 여부
    - 계약기간을 정했거나 정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고용전망이 없는 경우 그 이유 : (기술형)
  -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의 경우 주기적으로 - 미국은 분기 1회, 영국·캐나다는 년 1회 - 피보험자의 임금 및 조세, 보험료 기여와 관련

된 정보를 갱신하고 있음. 보험료 기여가 조세징수와 연동해서 관리되기 때문임.

- 개인별 피보험자관리로 전환하면서 정보를 확충할 경우 고용보험 DB를 통해서 관리되는 정보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시에 수집되는 정보들임.
    - 기본적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 학력 등)
    - 임금관련 정보 : 임금형태, 임금총액
    - 고용형태 : 소정근로시간, 계약기간 관련 정보
    - 직종(중분류)
    - 이직사유
  - 두 번째는 자격취득·상실시 뿐만 아니라 주기적(년 1회)으로 갱신되어야 하는 정보임. 정보를 갱신하는 시기는 매년 2월로 함.
    - 임금관련 정보 : 개인별 임금형태 및 전년도 임금총액, 사업장의 임금총액
    - 고용형태 : 소정근로시간, 계약기간 유무, 있을 경우 기간
    - 직종(중분류)
  - 각종 고용보험 관련 사업 활용시에 수집되는 정보도 확충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는 재취직훈련, 학자금대부, 수강장려금 수혜 관련정보만 수집되었음. 추가로 관리되어야 할 정보들도 주로 직업훈련과 관련된 사업들임.
    - 사업내 직업훈련 수혜자 주민등록번호, 훈련기간, 훈련기관, 훈련과정
    - 고용유지훈련 수혜자 주민등록번호, 훈련기간, 훈련기관, 훈련과정
    - 채용장려금 및 각종 장려금 관련 정보

### 3. 피보험자 정보의 수집·관리방안

#### 가. 정보수집 방식의 개선

- 기존에는 서류신고를 통해 정보를 수집·관리하였으나 서식뿐만 아니라 전산자료 형태로도 각종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관련해서 각종 서식을 DB화가 가능한 파일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함.
    -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디스켓을 직접 배포하도록 함.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각종 사업신청 관련 서식은 내려받은 파일을 다시 E-Mail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함.
  - 1년에 1회 갱신해야 하는 정보들도 전산파일 형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특히 기존에 자체적으로 임금 및 고용관련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손쉽게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는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 일본에서는 상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 등의 서식은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Reader를 이용한 입력을 하고 있음. 또한 미국에서는 분기별로 전산자료 형식으로 정보를 신고받고 있음.

#### 나. 정보관리 방식의 개선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이나 사업수해시의 정보들은 서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에 입력하지 않던 정보나, 새로 확충되는 정보를 DB에 입력함으로써 관리될 수 있음.

- 정보를 전산파일 형식으로 받거나, 직접 인터넷상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입력과 관련된 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음. 물론 신고된 내용을 점검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제도로 전환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정보를 어떻게 수집·관리하는 가임.
-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할 정보 가운데 임금과 관련된 정보들은 매년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통해 수집되고 있음. 가능한 한 국세청에서 전산화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 임금과 관련된 정보가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서 갱신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득신고와 동일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받거나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상담원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외의 다른 정보들도 모든 피보험자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함. 특히 직종의 경우 직무내용을 사업주가 신고하고 직업안정기관 - 혹은 입력전문기관 - 에서 일괄해서 직종분류코드를 입력하도록 함.
- 피보험자 관련 정보를 확충하고 사업장 중심의 관리를 개인별 관리로 전환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임.
-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장 중심의 관리를 개인별 관리로 전환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사업 수혜와 노동시장 이력 관련 정보를 개인 단위로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관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

- 이 증가함에 따라 저장장치(Hard Disk)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CPU의 확장도 고려해야 할 것임.
- 현재 고용보험전산망의 CPU 활용수준은 약 70~85%(적정수준 : 85%) 선이며, CPU의 활용수준은 지방관서에서 동시에 접속을 많이 할 경우에 높아지게 됨. 그러나 정보 양의 증가가 업무량의 증가(입력작업시간 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각 전산망간의 정보 공유는 다른 전산망에서 정보를 복사하여 오는 방식(FTP)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의 실시간 조회나 검색이 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는 정보간의 상호 호환성, 즉 실시간 조회나 검색 및 통합 DB를 이용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용안정정보망(웹기반 환경)과 실업자관리DB시스템(웹기반 환경), 고용보험전산망간(CS 폐쇄형)의 운영환경 및 체계를 통일시켜 각 전산망간 정보의 실시간 전송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의 생산과 제공을 위하여 활용목적에 맞도록 전산망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 고용안정정보망 및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각 전산망이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보의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이 경우에 각 전산망의 정보를 이용한 2차 DB를 구성하여 활용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용안정전산망에서의 개인의 학력, 전공, 부양가족 수 등의 정보와 고용보험전산망의 직업이력을 통합하여 2차 DB를 만들면 일선 직업상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를 규격화(양식 등)시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업상담원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모든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음.

#### 다. 피보험자의 고용기록 관리

- 이직시에는 현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만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보험자 본인이 스스로의 고용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시직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었고, 앞으로 일용직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므로 이직이 빈번한 피보험자의 고용관리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노동이동이 활발함.
  - 건설일용근로자와 관련해서 허재준·심규범(1999)의 경우 고용증명서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이직시나, 1년에 1회, 3부의 고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본인과 피보험자, 징수기관이 1부씩 갖게 됨.
- 건설일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피보험자들이 스스로 고용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이동이 빈번하거나 사업주가 가입을 기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일본의 경우 피보험자증을 통해 고용기록을 관리하고 있음. 피보험자증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 새로이 발급되며, 이직시에도 보관하다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경우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 영국의 경우 이직시에 피보험자에게 3부의 서식을 주고, 1부는 본인이, 나머지 2부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피보험자 관리보다는 조세 및 보험료 기여에 필요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보험자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피보험자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직시에 상실신고서와 동일한 양식을 피보험자 본인에게 2부를 교부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재취직시에 새로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함.

#### 4.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와 적용·징수제도 개선

- 개인단위로 전년도의 임금총액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보험료 징수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임금총액(연중에 신규로 피보험자가 된 경우 자격취득시 월평균 임금총액)으로 할 경우 보험료 징수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실업급여 사업 적용제외자를 제외한 모든 피보험자의 임금관련 정보를 적용·징수기관이 확보하게 되므로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확정·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보험료 고지에 의한 징수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주의 편익을 상당히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험료 보고 및 계산과 관련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임.
  - 다만, 적용제외자로서 피보험자로 관리되지 않는 집단 - 실업급여사업의 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납부 - 의 보험료 징수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임금총액과 개인별 임금총액을 고려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 ※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사업이 적용될 때까지는 과도적으로 년 1회 임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임. 징수방식의 자세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허재준(2000)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현행의 개산·확정방식에 의한 징수체계로부터 고지·월납 방식에 의한 징수체계로 전환할 경우 사업장, 특히 소규모사업체의 폐업이나 이전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이전할 경우 고지서 반송이나 보험료 체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
- 보험료 징수의 기준을 전년도 임금으로 전환하면서 실업급여 및 임금수준과 연동되어 있는 각종 지원금의 지원기준도 이에 따르도록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업급여의 경우 기준을 전년도 임금총액으로 할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임.
- 임금수준과 연동되어 있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산정할 때 별도로 임금관련 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임금 관련 정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지원 신청 및 근거서류의 작성과 관련된 사업주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을 것임.

## 5. 정보의 신뢰성 제고

- 피보험자 관리를 통해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야 함. 그러나 피보험자 관리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모든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 전산입력이 행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 신고된 정보가 그대로 입력되거나 입력오류(punching error) 및 입력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 잘못 신고된 정보가 그대로 입력되거나 입력에 오류가 있는 경우 Data의 질(quality)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고용보험 Data의 활용가능성을 제한하게 됨. 개인별로 직업안정서비스 제공시에 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오류들을 수정할 수 있으나, 거시적인 통계를 산출할 때에는 심각한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지연입력의 경우 Data의 동질성에도 큰 영향을 미침. 지연입력을 초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음.
    - 우선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인하여 상실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주의 지연신고와 지방노동관서 담당자의 지연입력도 원인이 되고 있음.

-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거나 입력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고된 서류의 접수단계에서부터 담당자의 일차적인 검토(screening)가 필요함. 다음으로 프로그램에 입력값의 범위를 설정하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오류경고표시(error message)를 화면상에 나타내 주는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 DB내의 정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입력 값 (code)의 범위”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매년 입력가능범위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연도, 학력, 관서코드 등이 여기에 해당됨.
  - 또한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정보 -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가 도입될 경우 축적되는 정보 - 들 가운데 임금 등이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이를 확인해서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에 따른 징수제도 개선 및 전산양식에 의한 신고를 확대함으로써 지연입력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의 개산·확정방식에 의한 징수체계로부터 고지·월납 방식에 의한 징수체계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의 폐업이나 지연신고에 따른 지연입력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장의 폐업이나 이전이 있을 경우 고지서 반송이나 보험료 체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확인이 가능함.
  - 관서에서의 지연입력 문제는 전산양식에 의한 신고방식을 확대할 경우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외에도 관서에서 지연입력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방하남·허재준·심규범·강현주·안학순(1999), 『사회보험통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2000), 「일자리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2차 중간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정연택(1997), 『직업안정기관의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정연택·심규범(1997),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적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허재준(2000), 「고용·산재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한 징수체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미발표자료.
- 허재준·심규범(1999),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황덕순(2000),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실태 및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労働省労働保険徴収課編, 『労働保険事務組合の實務』平成10年版.
- CCRA, [www.ccra-adrc.gc.ca/E/pbg/tf/t4contbq/0762.pdf](http://www.ccra-adrc.gc.ca/E/pbg/tf/t4contbq/0762.pdf).
- Farmer, T.E. and Searson, M.A.(1995), "Use of Administrative Records in the Bureau of Labour Statistics' Covered Employment and Wages(ES-202) Program", 1995 Bureau of the Census Annual Research Conference.
- Human Resource Development Canada, *Employment Insurance 2000 Guide for Employers*, [www.nf.hrhc-drhc.gc.ca](http://www.nf.hrhc-drhc.gc.ca).
- ICESA, *ICESA Format*, [www.icesa.org/articles](http://www.icesa.org/articles).
- National Audit Office(2000), National Insurance Fund Account 1998-99.
- Ohio Bureau of Employment Services, Ohio Employer's Guide to Magnetic

Wage Reporting, [stats.bls.gov/ore/pdf/st970160.pdf](https://stats.bls.gov/ore/pdf/st970160.pdf).

Searson, M.A. and Farmer, T.E.(1997), "Quality of the Bureau of Labour Statistics' Business Establishment List as a Sampling Frame", Bureau of Labour Statistics UK Employment Service, [www.employmentservice.gov.uk/downloads/mes.pdf](http://www.employmentservice.gov.uk/downloads/mes.pdf).

UK Inland Revenue, [www.inlandrevenue.gov.uk/employer/download.html](http://www.inlandrevenue.gov.uk/employer/download.html).

UK Employment Service, [www.employmentservice.gov.uk/downloads/mes.pdf](http://www.employmentservice.gov.uk/downloads/mes.pdf).

피보험자 개인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 발행연월일 | 2001년 1월 26일 인쇄  
2001년 1월 30일 발행
- 발행인 | 이 원 덕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11510-01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9층  
☎ 대표 (02) 782-0141 Fax:(02) 786-1862
- 조판·인쇄 | 성문인쇄사 (02) 2272-7553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등록번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